

민원 사무명	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				
민원내용	·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				
근거법규	·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				
처리부서	건축과	협조부서 (기관)	없음	처리 기간	20일
현장 조사사항	없음				
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	신청 ⇒ 접수 ⇒ 확인 ⇒ 검토 ⇒ 등록증 작성 ⇒ 등록증 교부 (위임전결 : 과장)				
구비 서류	<민원인 제출서류> 1.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.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,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.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.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.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(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)				
관련부서 (기관) 협조사항	관련부서명	협의사항			
	없음				
후속 이행사항	후속민원명	절차	시기	처리부서	조치사항
	면허세 납부		등록증 교부후	세무1과	
수수료 및 제반경비	· 면허세 · 국민주택채권 : 자본금의 2/1000				
관련후속 이행사항	없음				